

2026 총회자료집

CNSE-0414-001

2026년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2차 임시총회

일시 : 2026. 04. 14.

목 차

2026년 제 2차 임시총회

- 법인 일반현황 4
-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9
- 서기 및 기명날인인 선임 11
- 회순채택 12

제1호 안건

: 정관 변경 승인

_ 충남사경센터 우수택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지 정관 기재

- 분사무소 창설 추진 경과보고 15
- 정관 신·구 대조표 18

기타

- 광고 및 안내 19

부록

- 정관 및 각종 운영내규 22
- 회원가입 안내 및 회원명단 40

2026년 제2차 임시총회

법인 일반현황

□ 기관현황 및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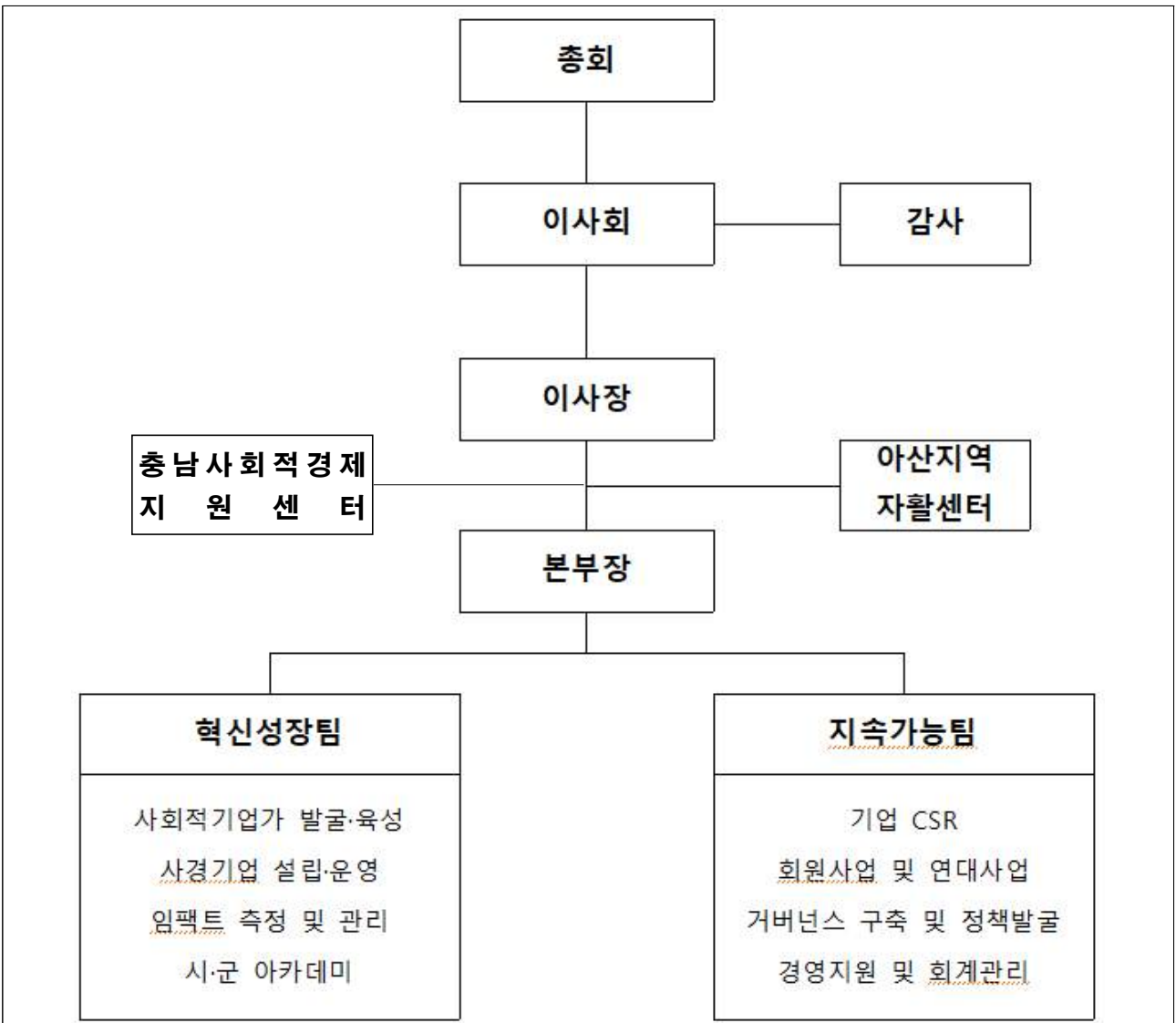
기관명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박찬무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54, 상문빌딩 2층	설립일	20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011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모임 구성, 사회적경제 워킹그룹 운영 •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이사장 전성환, 사무처장 최선희) 02. 사단법인 설립 허가(충청남도 제2012-1호) 04. 충남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고용부/행안부) 04. 충남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5. 제1회 충남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공동주최(천안) 05. 제1회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 주최(아산) 06. 충남 희망그린 협동조합아카데미 중간지원기관(충남평생교육진흥원) •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사무실 이전(공주 정안면 소랭이활성화센터 → 천안 나사렛대 랫드리지2관) 01. 사업자등록변경(면세법인사업자, 천안세무서) 01. 제2차 정기총회(이사장 보선 이윤기, 사무처장 박상우) 02.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2. 세종충남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고용부/안행부) 02. 충청권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수임(대전.충남.충북 컨소시엄) 03. 충남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운영기관(충청남도) 03. 충남 희망그린 협동조합아카데미 중간지원기관(충남평생교육진흥원) 04. 충남 서북부권 분사무소 개소(홍성군 /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안행부) 02.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전문기관 등록 지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2. 사무실 이전(천안 나사렛대 랫드리지관 → 아산 순천향대 공과대학) 02. 제3차 정기총회(부설, 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협동조합.사회혁신가치지원센터) 03. 여성 협동적경제 활성화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 수탁(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 충남 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상담.교육.홍보분야) 운영기관(충청남도)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행안부) 02.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기관 지정(보건복지부.아산시) 02. 제4차 정기총회(이사장 이윤기, 사무처장 박상우) 03. 2015 충남 협동조합 설립지원사업 운영기관(충청남도) •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1.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안행부) 02. 제5차 정기총회(공동대표 이윤기.박성호.최선희, 상임이사 박상우) 03. 내포사무실 개소(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1F) 			

- 04.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운영기관(충청남도)
- **2017**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행안부)
 - 02. 제6차 정기총회(이사장 이윤기, 상임이사 최선희)
 - 03.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운영기관(충청남도)
- **2018**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진흥원, 고용부/기재부)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2억 1천만원 지원)
 - 03.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행안부)
 - 04. 제7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사무처장 이혁수)
- **2019**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진흥원, 고용부/기재부)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2억 2천만원 지원)
 - 03. 충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행안부)
 - 03. 충남 학교협동조합지원사업 수행기관(충청남도)
 - 04. 사회혁신공유연구소 개소(호서대학교)
 - 05. 제8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사무처장 이혁수)
- **2020**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2억 3천만원 지원)
 - 02. 한국서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3억 지원)
 - 03. 충남 학교협동조합지원사업 수행기관(충청남도)
 - 04. 제9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사무처장 이혁수)
- **2021**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소셜벤처경연대회 강원·대전·충청 주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6억 지원)
 - 02. 한국서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3억 지원)
 - 03. 제10차 정기총회(이사장 신재학 사무처장 이혁수)
- **2022**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5억 8천만원 지원)
 - 03. 제11차 정기총회(이사장 신재학 사무처장 이혁수)
- **2023**
 - 01. 충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1.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KOMIPO 소셜그라운드" 출범 및 협약(사업비 6억 6천만원 지원)
 - 03. 제12차 정기총회(이사장 신재학 사무처장 이혁수)
- **2024**
 - 01. KOMIPO 소셜그라운드 협약(사업비 6억 5천만원 지원)
 - 01.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소셜그라운드 프로젝트" 수행(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1. 천안 SVI 측정·컨설팅 지원사업(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 사무실 이전 및 개소(아산시->천안시)
 - 03. 제13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상임이사 박정현)
- **2025**
 - 02. 충남 광역 네트워크 조직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충청남도)

- 02. 제14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상임이사 박정현)
- 02. 한국중부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사업비 6억 5천만원 지원)
- 04.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사업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4. 충남 임팩트 투자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충청남도)
- 04. 충남 임팩트 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충청남도)
- 2026
 - 02. 제15차 정기총회(이사장 박찬무 본부장 최인목)
 - 02.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사무 지원사업(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충청남도)
 - 03. 충청권역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운영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 2026년 충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회적가치 측정 지원기관(충청남도)

□ 조직현황

· 조직도



· 업무분장

성명	부문	직위	역할	세부 업무	비고
공통			조직사업	■ 회원모집 및 네트워크 참여, 기획	-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 시군 및 유관기관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
			KOMIPO 소셜그라운드	■ 소셜그라운드 B트랙	-
			프로젝트	■ 기타 프로젝트 사업	-
박찬무	이사장		법인 총괄	■ 대외협력 ■ 법인 인사 및 평가	비상근
최인묵	운영 본부	본부장	사업총괄	■ SE 창업·경영 지원사업 ■ KOMIPO 소셜그라운드 ■ 조직사업(회원사업·연대사업)	-
			임팩트 관리	■ 조직 역량강화 및 임팩트 관리	-
황은하	혁신 성장팀	팀장 (선임)	SE 창업·경영지원사업	■ SE 창업·경영지원사업 실무총괄 ■ 창업팀·멤버십 기업 멘토링 ■ SVI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멘토링	-
			조직사업	■ 회원사업	-
김나래	혁신 성장팀	매니저	SE 창업지원사업	■ SE 창업지원사업 · 창업팀/졸업팀 행정관리 및 기관 사업비 관리 · 창업팀/졸업팀 교육 및 실적관리	-
최유정	혁신 성장팀	매니저	SE 경영지원사업	■ SE 경영지원사업 · 기관 사업비 관리 · 멤버십 기업 교육 및 실적관리 · 소캤온 시설 및 대관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시상담	-
최혜진	지속 가능팀	팀장	기업 CSR	■ 코미포 소셜그라운드 실무총괄 · R트랙, G트랙, B트랙	-
			경영관리 및 조직사업	■ 법인회계·사무, 조직사업 실무총괄	-
양채정	지속 가능팀	선임	기업 CSR	■ 코미포 소셜그라운드 기획 및 관리 · R트랙, G트랙, B트랙	-
			조직사업	■ 회원사업 ■ 연대사업	-
이서연	지속 가능팀	매니저	기업 CSR	■ 코미포 소셜그라운드 실무 · R트랙, G트랙, B트랙	-
			경영관리 및 조직사업	■ 법인회계 및 사무 ■ 회원사업 ■ 연대사업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 SNS 관리(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및 홍보	-

· 임직원현황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이사	박찬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 사 장	당연직
	김용빈	(주)해피캔버스	대 표	CSR
	김정민	보령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센 터 장	중간지원기관
	김혜경	백석대학교 지역혁신추진단	단 장	대학
	노병갑	충남광역자활센터	센 터 장	중간지원기관
	박경호	농업회사법인 (주)한국특산물유통	대 표	사회적기업
	심재우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이 사	당연직
	양채정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매 니 저	당연직 (근로자대표)
	이상희	기후행동NOW	대 표	시민사회
	이영석	(주)청그라미	대 표	임팩트투자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시민사회
	한규일	호서대학교 산학협력팀	팀 장	대학
감사	김만석	공동체세움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	사업감사
	이시현	이시현 세무사무소	대 표	회계감사
직원	박찬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 사 장	-
	최인묵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본 부 장	-
	황은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선임팀장	
	최혜진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팀 장	-
	양채정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선 임	-
	이서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매 니 저	-
	김나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매 니 저	

성원 보고

총 재적 회원 98명 중 출석회원 00명으로 과반이 되어 2026년 제2차 사단법인 충
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임시총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정관 제27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회 선언

2026년 제2차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기에 2026년 4월 14일 개회를 선언합니다.

서기 및 기명날인인 선임

2026년 제2차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임시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한 서기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 제29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회순 채택

2026년 제2차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임시총회 진행을 위한 회순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 1호 안건	· 정관변경 승인_충남사경센터 위탁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지 정관 기재	
-	· 기타	-

안건 심의

안건번호 제 1호

정관변경 승인

충남사경센터 위수탁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지 정관 기재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충남사경센터 위·수탁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지 정관 기재를 위한 정관변경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 분사무소 창설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지 정관 기재

2026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분사무소 설치 추진경과 공유

1 분사무소 설치 추진 배경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 확정 이후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 확인
- 센터의 사업비 지출, 문서결재, 각종 웹사이트 가입·구독등(ex. 한글 및 오피스 프로그램) 행정소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와 센터장의 운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분사무소 설치 필요성 확인

2 세부 추진경과

일시	추진 사항	추진 내용
26.03.18	인수인계 절차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진구, 오세민 팀장 미팅 ■ 사경센터 분사무소 설치 필요성 확인 * 분사무소 설치 총회 의결사항 확인
26.03.19	법인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무소 설치 논의를 위한 이사회 안건 상정 ■ 이사회 안건 승인 및 임시총회 개최 결정
26.03.19 ~ 03.30	임시총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절차 검토 및 자문(법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무소 설치 절차 적법성 - 온라인 임시총회 절차 적법성 ■ 법무사 검토 및 자문 완료후 임시총회 개최 공고
26.04.01	임시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제 1차 임시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3명 참석(43명 참석, 위임 10명) ■ 분사무소 설치 안건 승인
26.04.02	등기변경 절차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결과에 따라 등기변경을 위해 법무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절차 검토 및 자문 법무사와 동일 ■ 등기변경을 위한 절차 검토중 분사무소 설치시 정관내 분사무소 소재지 표기 필요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내 소재지 표기를 위해선 정관변경 필요

분사무소 설치 등기시 소재지 기재필요 근거법령

현행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07.02 [상업등기신례 제2-106호]

분문	개정이유	개정문
		<p>1.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p> <p>2.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p> <p>(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p> <p>참조조문 : 민법 제40조제3호, 민법 제42조</p> <p>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4호</p>

정관 개정 내용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제정 2012. 01. 19.
- 1차 개정 2014. 10. 31.
- 2차 개정 2018. 02. 21.
- 3차 개정 2021. 02. 24.
- 4차 개정 2024. 08. 05.
- 5차 개정 2025. 04.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NSNET")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과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및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지역민 참여 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현행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제정 2012. 01. 19.
- 1차 개정 2014. 10. 31.
- 2차 개정 2018. 02. 21.
- 3차 개정 2021. 02. 24.
- 4차 개정 2024. 08. 05.
- 5차 개정 2025. 04.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NSNET")라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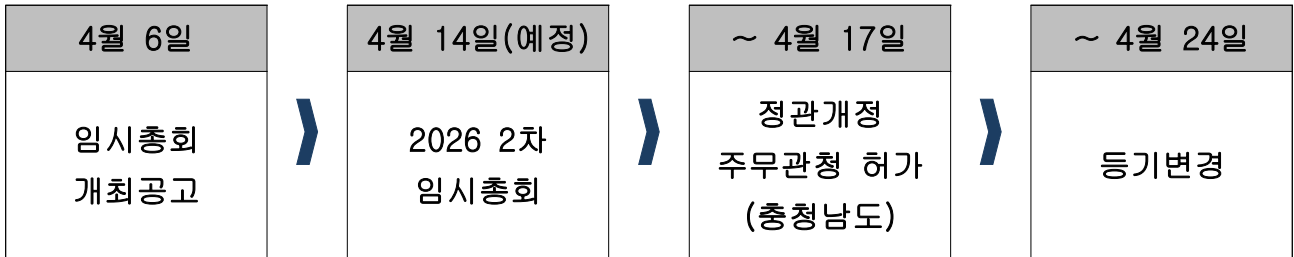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과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및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지역민 참여 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둔다.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추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③ 세부 일정

- 정관변경을 위한 추가 임시총회 개최 필요
- 정관변경 임시총회 의결 및 분사무소 설치 실무절차 진행



2026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변경 신규 대조표

기 존	신 규	개 정 이 유
<p>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둔다.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분사무소 기재를 위한 등기 변경 시 증빙서류로 분사무소 주소지가 기재된 정관 제출 필요 [변경등기 전, 정관변경에 따라 주무관청_충청남도의 정관변경인가 절차 필요]</p>

기 타

-

기타 광고 및 안내

부 록

- 정관 및 각종 운영내규
- 회원명단 및 회원가입안내

정관 및 각종 운영내규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2. 01. 19.

1차 개정 2014. 10. 31.

2차 개정 2018. 02. 21.

3차 개정 2021. 02. 24.

4차 개정 2024. 08. 05.

5차 개정 2025. 04.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NSENET”)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과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및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지역민 참여 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2.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사업
3.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4.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5.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사업
6.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위한 창업기획자 활동(초기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사업

7. 사회연대경제 행사 용역 사업

8.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긴밀히 연관되는 목적사업을 위해 필

요한 추진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회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은 개인과 단체 가입이 가능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 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정직,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5명 이상 (이사장포함)
3. 감사 : 2명

②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근로자 대표를 1인 이상에서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며, 서비스 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 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담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5. 이사회 회의에 상당 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때 당연 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성실 의무]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근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를 대리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일상적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 및 이사회,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후원회장] 이 법인의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담보, 증여, 대여, 매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분사무소의 창설 및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7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 [지위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4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예산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업무 추진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
10. 각 분사무소의 운영 규정에 관련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 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 이사의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별기구 및 사무처

제35조 [특별기구의 설치]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사무처]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특별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법인의 재산]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또는 동산으로서 이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재산은 2항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사업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5. 기타

제40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이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용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47조 [정관의 변경] 이 법안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제4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없이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한다.

제50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고지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3조 [정치중립의무] 이 법인은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54조 [인터넷 정보공개] ① 법인은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1.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사무소의 규정 승인] 각 필요한 지역의 분사무소의 규정은 법인 정관에 준하여 제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10. 3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내규

제정 2013. 3. 28.

제1조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설기관 또는 특별기구의 장, 회원조직 및 사업단의 책임자, 사무처의 실무책임자를 가르킨다.

제2조 임원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및 활동규범을 준수하고, 임원 영입이나 활동상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1만원 이상, 연 1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소속 조직의 장에게 밝히고, 해당 조직의 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처에게 통지한 이후에 사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지 아니한다. 임원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은 회원내규에 준한다.

회원투표 및 임원선출 내규

제정 2013. 3. 28.

1차 개정 2021. 2. 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3조 (회원투표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구분한다.

제4조 (회원투표 방법) 회원은 회원투표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투표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회원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해야 한다.

제2장 의결투표

제5조 (의결투표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이사장이 발의한다.

제6조 (의결투표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회원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은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한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투표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일 20일 전에 법인의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명부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투표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사실 유포, 인신 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원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여와 투표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사항은 우리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한 회기에 같은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선거투표

제12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정수) 이사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30일전에 이사장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정관과 회원내규, 임원내규 등 우리 법인이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회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1년 경과 자격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입후보의 등록) 이사와 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1. 사진이 첨부된 생년월일과 주요경력 등이 포함된 자기 소개서
2. 우리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3. 위원회, 사업단 등 회원조직의 추천 의결서 또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서

제15조(후보자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1. 이사와 감사 후보의 자격 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2.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 후보 등록서류의 신뢰성
 - 회원내규 및 임원내규 등 법인의 제반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 기타 우리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항 여부 등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사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이사, 감사, 사무처장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회원내규와 임원내규를 준수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이사장과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반드시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견조사

제20조(회원의견조사) 이사회는 우리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견조사의 효력) 이사회는 회원의견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성희롱 방지 내규

제정 2013. 3. 28.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 법인 회원 간에 단체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희롱 고충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성희롱 고충처리) 활동 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 임원을 성평등노동위원으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평등노동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성평등노동위원은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무처장은 이사장 등과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성희롱 예방지침)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2. 회원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 때 술과 유희를 강요하지 않는다.
6. 공식적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9.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0.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활동가 전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 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과 회원이 숙지하도록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성평등노동위원이나 사무처장, 이사장 등 임원은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눈으로 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옷은 입을 채로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말로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몸으로 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회원명단 및 회원가입 안내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꿈꿉니다!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셜벤처 • 마을공동체 • 풀뿌리 주민조직



지원하다

- 설립 상담 및 행정지원
- 기초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 홍보 및 교육 지원
- 협업공간 및 창업 지원



기반을 다지다

- 정보포털 및 아카이브 운영
- 조사 및 정책제안, 제도개선
- 현장실험 및 사례 발굴
- 혁신파크 등 융복합 사업



역량을 강화하다

- 사업체 비즈니스 고도화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지원
- 시군 현지화 및 역량 강화
- 모금역량 강화 및 기금 조성



네트워크하다

- 만·관·산·학·연·연 프로보노 연계
- 중간지원조직간 교류와 협력
-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
- 거버넌스 활성화



어떻게 운영하나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법인 사무국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작은 정성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운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거듭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안형 사회단체입니다.

법인 산하의 부설 센터(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아산지역자활센터)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연대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위탁하는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달·보완하는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원이 되시면...

-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일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소식 및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사 및 소모임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충남지역공동체플랫폼 아카이브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교육비 및 대관료 등을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명단 - 『아름다운 기부자』

(2026. 03. 30. 현재)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정성,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1	정회원	(주)다이스	22	정회원	권미옥
2	정회원	(주)드로니아	23	정회원	김기배
3	정회원	(주)삼성솔루션	24	정회원	김나래
4	정회원	(주)세상놀이연구소	25	정회원	김만석
5	정회원	(주)아름다운마을	26	정회원	김미란
6	정회원	(주)어밀리티	27	정회원	김영관
7	정회원	(주)열린문디자인	28	정회원	김용빈
8	정회원	(주)위드유	29	정회원	김원기
9	정회원	(주)자기돌봄연구소 아카이브포다	30	정회원	김의수
10	정회원	(주)즐거운밥상	31	정회원	김정민
11	정회원	(주)코끼리별꽃	32	정회원	김종현
12	정회원	(주)혜안	33	정회원	김지훈
13	정회원	(주)휴비즈코리아	34	정회원	김태웅
14	정회원	나누어드림협동조합	35	정회원	김혜경
15	정회원	농업회사법인(주)파머스힐	36	정회원	노병갑
16	정회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37	정회원	박경주
17	정회원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38	정회원	박경호
18	정회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39	정회원	박성민
19	정회원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	40	정회원	박소진
20	정회원	협동조합 초록있담뽕	41	정회원	박영식
21	정회원	힐링숲터사회적협동조합	42	정회원	박은자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43	정회원	박인수	64	정회원	유재준
44	정회원	박정현	65	정회원	유현임
45	정회원	박찬무	66	정회원	유현진
46	정회원	박춘섭	67	정회원	이기영
47	정회원	배윤주	68	정회원	이상희
48	정회원	선영숙	69	정회원	이서연
49	정회원	손석현	70	정회원	이선복
50	정회원	손정원	71	정회원	이시현
51	정회원	송계숙	72	정회원	이아현
52	정회원	신재연	73	정회원	이영석
53	정회원	신재학	74	정회원	이원돈
54	정회원	심재우	75	정회원	이재수
55	정회원	심진수	76	정회원	이현수
56	정회원	안영광	77	정회원	이홍택
57	정회원	양채정	78	정회원	이후순
58	정회원	어윤수	79	정회원	임가혜
59	정회원	엄청나	80	정회원	임소영
60	정회원	오광근	81	정회원	정진오
61	정회원	오명래	82	정회원	정태영
62	정회원	오세민	83	정회원	조민이
63	정회원	유선애	84	정회원	조원빈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85	정회원	조혜지	106	후원회원	마음치유숲
86	정회원	최민혁	107	후원회원	부여 서동 사회적협동조합
87	정회원	최선희	108	후원회원	살렘마을협동조합
88	정회원	최영준	109	후원회원	아산풍성한영농조합
89	정회원	최유정	110	후원회원	협동조합 주인
90	정회원	최인묵	111	후원회원	강윤정
91	정회원	최재권	112	후원회원	강정진
92	정회원	최지용	113	후원회원	고철용
93	정회원	최혜진	114	후원회원	고현주
94	정회원	추승우	115	후원회원	김규원
95	정회원	한규일	116	후원회원	김근태
96	정회원	허지선	117	후원회원	김민숙
97	정회원	현상용	118	후원회원	김지영
98	정회원	황은하	119	후원회원	김진배
99	후원회원	(주)로컬몬스터	120	후원회원	김진희
100	후원회원	(주)새림종합환경	121	후원회원	김태경
101	후원회원	(주)어콜렉티브	122	후원회원	김혜림
102	후원회원	(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123	후원회원	박민아
103	후원회원	(주)천우당	124	후원회원	서혜원
104	후원회원	농업회사법인 (주)토심바이오	125	후원회원	설경미
105	후원회원	대원지앤지	126	후원회원	송재원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연 번	회원구분	이름(상호)
127	후원회원	송지용	152	후원회원	최진구
128	후원회원	심전호	153	후원회원	현석
129	후원회원	유호근	154	후원회원	홍은일
130	후원회원	이상구	<p style="text-align: center;">총 회원 154 (정회원 98 / 후원회원 56)</p>		
131	후원회원	이수연			
132	후원회원	이순자			
133	후원회원	이승석			
134	후원회원	이은영			
135	후원회원	이은옥			
136	후원회원	이종현			
137	후원회원	이종현			
138	후원회원	이지윤			
139	후원회원	이혁수			
140	후원회원	이호수			
141	후원회원	임종민			
142	후원회원	장은희			
143	후원회원	장주현			
144	후원회원	전지훈			
145	후원회원	정영찬			
146	후원회원	정일순			
147	후원회원	정지혜			
148	후원회원	조진우			
149	후원회원	진현호			
150	후원회원	최낙원			
151	후원회원	최영석			

CMS 회원가입 신청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돈 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공동체... 경쟁 보다는 '협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꼭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정 회원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 회원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만 하는 회원
이름 (법인명)	추천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됩니다.
이 메 일	
휴 대 전 화	
우편물 수령주소	
은행_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출금 희망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0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31일
후 원 금 액	<input type="checkbox"/> 월 1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2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3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50,000원 <input type="checkbox"/> 월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매년 _____ 원)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회원가입 및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납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CMS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수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041-415-2012, 회원관리담당)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